

「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일자 2023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성공적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3조제3호 중 “필요한 시설 및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함.

「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성공적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필요한 시설 및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원 안 | 수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위탁 및 사업수행) 시장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대회에 <u>필요한 시설 및</u>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</p> <p>4. · 5. (생략)</p> | <p>제3조(위탁 및 사업수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</p> <p>4. · 5. (원안과 같음)</p> |

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위원회의 설립) 구미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(이하 '대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(이하 '조직위원회'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제3조(위탁 및 사업수행) 시장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
2.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
3.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
4. 대회와 관련된 국내·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
5.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 등)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(공동)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8

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과 대한육상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문화체육,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'사무처'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, 조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조직위원회 지원) 시장은 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행정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.

1. 조직위원회의 관리,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공유재산의 대부)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9조(보고·검사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